

제 653 호
1978. 4.2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공보관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1235 호 :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농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3
- 제 1236 호 : 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 취득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4

◎ 고 시

- 제 179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지적승인.....5
- 제 180 호 : 도시계획시설(여객 자동차 정류장) 결정.....6
- 제 181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7
- 제 182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실시계획인가.....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금 위한 자동차세, 농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지춘 인

1978.4.27

○ 서울특별시조례 제 1235 호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금 위한 자동차세, 농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금 위한 자동차세, 농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금 위한 시세 과세 면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① 다음 제 1 호에 기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

득과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 다음 제 2 호 내지 제 5 호에 기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사업 시행 이전의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 또는 연면적에 대하여 따로 과세하고 제 1 호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25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따로 과세한다.

1.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취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 포함한다) 또는 토지
2. 취약지 대책사업에 따른 독립 가옥 집단화용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대채취득
3. 분산농지 집단화에 따른 토지의 대채취득
4.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사업

및 수해상습지 마을 대책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대체취득

5.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을가꾸기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건축법상의 증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토지의 1년 이내의 대체취득

②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에 따른 다음 각호의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에 대하여는 자투리차세, 농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1. 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소유 자동차
- 2.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지

3. 마을 공동 경영 사업장

③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 면제기간은 주택개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 3조 (면제신청) ①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출장소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출장소장)이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효력손실기간) 이 조례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제 2조 제 3항과 그에 관련된 규정은 예외로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공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4.27

○ 서울특별시조례 제 1236 호

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원호대상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은 원호대상자 자활 지원 기금 운용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25평 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와 농지로 한다. 다만, 취득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25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따로 과세한다.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관할 지방 원호지청장이 확인한 시세 각면 대상 계산증명서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출장소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다른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도로) 등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

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4.27
서울특별시

가. 변경 및 지적 승인 조서

구분	종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정	종 점	비 고
기정	종로	2	141	15m	1,400m	경제기획원복동축	대 3-20	적산동 210-214간
변경	"	"	"	"	"	"	"	80m 구간 위치변경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0 호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결정

-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호 ('77.3.16) 의 권한 위임 규정

○ 시설 결정 조서

- 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4.27

서울특별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영등포구 구로동 146-6의 2 필지 (16, 17)	4,554㎡ (1,380평)	보성운수 (주)
"	"	용산구 보광동 80-21의 2 필 (22, 23)	1,850㎡ (560.4평)	삼성여객 (주)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81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 호 ('74. 4.8) 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경비국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8.4.28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성북구 안암동 5 가 신 1 의 29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고려대학교
- 3. 면적 및 규모 : 12,059.93 평 (3,655 평)
- 4. 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안암동 5 가 1 번지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활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78.4.25

나. 준공예정일 : '80.5.15

- 6.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 7. 공사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82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5 호 (77. 5.19)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6 호 (77.10.21) 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

- 3.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8.4.28

서울특별시

나. 하수도 시설공사 :

폭원 3.0×2.0×3면

연장 354 미터

1. 사업시행의위치 : 가. 충정로1가 88번지 3호 - 의주로1가 44번지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가.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나. 하수도 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가.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

폭원 6-15 미터

연장 50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 계획 인가 즉시 - 78.12.31

6. 사용 또는 수용한 재산의 소재지 : 별첨 토지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